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96 호
의결년월일	2005. 5. . (제 15 회)

제출일자	2005. 4.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등 변경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종합토지세 삭제(안 제3조제2항제8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2.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안 제25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3.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안 제26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4.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안 제27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안 제28조).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6.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안 제29조제1항).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7. 재산세의 세율 적용(안 제29조2).

-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8. 재산세의 납기 조정(안 제29조의3).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

9.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30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

10.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안 제31조제1항).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11. 구관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안 제32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2.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안 제3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3. 자동차세 세율 조정(안 제39조제1항).

-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14. 주행세의 세율조정(안 제44조제1항).

-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15.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안 제58조제5항).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16.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안 제60조제3항).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17.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안 제2장제8절).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18.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안 제88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19.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안 제90조).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0.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안 제91조).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
21.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안 제92조).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정리
22.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안 제9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23.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안 제95조).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도시계획세 납기를 조정
24.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안 제96조).
 -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25.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안 제97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26.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안 제98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7.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예의 직권등재(안 제99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개정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

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2조 제목중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4조 제목중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9조제1항제1호의 <표> 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제8절(제76조 내지 제87조)을 삭제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91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 토지·건축물 및 주택”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내지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6조중 “1,000분의 2” 를 “ 1,000분의 1.5”로 한다.

제97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9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7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략) 제25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6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과세대상 등) ----- <u>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u> ----- ----- 제26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현행	개정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현행	개정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토지
(1) 주택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2억원이하 1,000분의 2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건축물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2. 선박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1)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주택
(2)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현행	개정
② (생략) <신 설>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정수할 수 있다.
<신 설>	

현행	개정
제30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제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30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제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 ----- -----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현 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4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3,000시시이하	24원	2,500시시이하	220원

1의2. ~ 6. (생략)

② (생략)

제44조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으로 한다.

② (생략)

개 정

②-----부동산-----

제34조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	-----	-----	-----
-----	-----	-----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 (세율) ①-----

1,000분의 215-----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58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0조(세율) ① ~ ②(생략) <u><신설></u> 제8절 종합토지세 <u><제76조 내지 제87조></u> 제88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90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8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0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u><삭 제></u> <u><삭 제></u> 제88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0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1. ~ 3. (생략)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 ----- 6. ----- -----

현 행

제91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 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적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5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개 정

제91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②-----

-----재산세과
세대장-----

제92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제94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96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6조 (세율) -----1,000분의 15-----
제97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7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 <u>재산세</u> ----- ----- <u>재산세</u> -----
제98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생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 (신고의무) ①----- ----- <u>건축물 및 주택</u> ----- ----- -----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94조</u> ----- ----- ----- ④----- ----- ----- ----- ----- <u>법 제194조</u> ----- <u>재산세</u> ----- -----
제99조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 ----- ----- ----- ----- <u>재산세</u> ----- ----- <u>과세대장</u> ----- -----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95 호
의결년월일	2005. 5. . (제 15 회)

제출일자	2005. 4.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2조제1항).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2.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3.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5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을 재산세로 규정

4.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6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5.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개정

6. 농어촌주택개량 등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안 제9조).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재산세로 규정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7. 임대주택 대한 감면 대상 확대(안 제10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용 공동주택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 신설
- 건설임대 1항과 매입임대 2항 별도규정
 - 건설임대 : 60 ~ 149㎡까지 감면 확대(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60 ~ 85㎡까지 감면 확대(재산세 25%감면)

8.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조정(안 제11조).

- 「1,000분의 3」 ⇒ 「1,000분의 1.5」 로 규정

9.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안 제12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및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1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재산세로 정비(안 제1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1.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조문개정 정비(안 제14조의2).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2.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안 제14조3).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3.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15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6조).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 1. 14 개정으로 관련조문 변경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5.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17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6. 종합토지세 규정 삭제(안 제18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삭제

17.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19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8.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 정비(안 제20조).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19.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21조).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2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규정 삭제(안 제22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삭제

21.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23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22. 재산세 ·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2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23.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안 제26조).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24.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정비(안 제27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규정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참고자료
 - 신 · 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조중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의2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의3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를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8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삭제한다.

제19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0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2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내용중 “주거용 건축물”을 각각 “주택”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u>를 면제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u>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환경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 ----- 1. (현황과 같음) 2. -----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 3. (현행과 같음) ②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현행	개정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에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

현 행	개 정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3</u>을 적용한다.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 <u>1,000분의 15</u>-----.

현행	개정
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4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u>를 추징한다. 제14조의3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2. (생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u> <u>의평가에관한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 ----- <u>재산세</u> ----- ----- 제14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 ----- ----- <u>「지방세법시행령」</u> ----- <u>제131조의2 제2항</u> ----- ----- ----- <u>재산세</u> ----- ----- ----- <u>재산세</u> ----- ----- 제14조의3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 ----- ----- ----- <u>재산세</u> ----- ----- 1.~2. (현행과 같음) 3.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 <u>제9조</u> ----- -----

현행	개정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6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u>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산세----- ②-----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현행	개정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삭 제>----- -----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 -----재산세----- ----- -----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1. ----- -----재산세----- 2. ----- -----재산세-----

현행	개정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u>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u>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u>종합토지세</u>의 세율은 <u>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u>.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 ----- ----- 「<u>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u>」----- ----- ----- ----- ----- <u>재산세</u> ----- -----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u>재산세</u> ----- -----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 ----- <u>재산세</u> ----- ----- 제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u> ----- -----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 ----- ----- ----- <u>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u> ----- -----

현행	개정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 -----주택-----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한다. ----- -----주택----- -----. 제27조 (직접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 -----.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97 호
의결년월일	2005. 5. . (제 15 회)

제출일자	2005. 4.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발생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수수료 감면 근거 법령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의 항목과 요율을 신설하여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규정함(안 별표 1).
- 수수료 감면 근거 법령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4호).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 6. 부동산관계란에 다음과(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 (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율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관계				6. 부동산관계			
<u><신설></u>				(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별	500원	
<u><신설></u>				(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별	500원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8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생략)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⑤ (생략)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수수료는 제외한다. 1~3. (생략)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때 5. (생략)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table> <tr> <th>구분</th><th>기준</th><th>요액</th><th>비고</th></tr> <tr> <td>6. 부동산관계</td><td></td><td></td><td></td></tr> <tr> <td><u><신 설></u></td><td></td><td></td><td></td></tr> <tr> <td><u><신 설></u></td><td></td><td></td><td></td></tr>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관계				<u><신 설></u>				<u><신 설></u>			
구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관계																
<u><신 설></u>																
<u><신 설></u>																

개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1~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3항..... 5.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table> <tr> <th>구분</th><th>기준</th><th>요액</th><th>비고</th></tr> <tr> <td>6. 부동산관계</td><td></td><td></td><td></td></tr> <tr> <td>(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td><td>년도별 동 별</td><td>500원</td><td></td></tr> <tr> <td>(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td><td>년도별 동 별</td><td>500원</td><td></td></tr>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관계				(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 별	500원		(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 별	5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관계																
(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 별	500원														
(8)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년도별 동 별	500원														